

수원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나593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나59370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 11 선고 2020가단23021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예지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3. 5. 24.

판결선고 2023. 6. 21.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 11. 선고 2020가단23021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C와 사이에 2019. 1. 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해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외에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은바,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C 등 망인의 자녀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망인 명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하면 C의 구체적 상속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C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피고의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을 제14 내지 24호증은 피고가 운영하는 꽃가게 인근 상인들의 사실확인서이거나 망인의 진료기록으로, 위 각 증거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의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넘어 망인을 부양했다거나, 망인 명의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기여분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유량, 판사 김나연, 판사 박준규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광역시 서구 동[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벽식구조 슬래브지붕 20층 아파트

1층 내지 2층 각 469.4604㎡, 3층 내지 20층 각 562.792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인천광역시 서구 대 46545.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호 벽식구조 84.7379㎡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46545.5분의 66.3291 끝.

